

# 의안검토보고서

1. 발의 또는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 건 요 지 : 불 임 참 조

4. 검 토 의 견 : 불 임 참 조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불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권태환

# 대전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본 조례안은 2009년 11월 2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1. 제안이유

시민이 기억하기 쉽고 부르기 편하도록 제명을 간소화하고  
「건축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제명변경 및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대해 강화된 의무와 사회적  
관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중심의 편의시설 설치가 되지 못하고  
최소 규정을 맞추는 설치자 중심의 편의시설 설치로 이용대상자에게  
불편을 발생시켜 이용을 멀리하고 있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  
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기억하기 쉽고 부르기 편하도록 자치법규  
제명을 간소화하고, 건축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